

2021년 9월 3일
안건 번호: U-210595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가 규제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사회 단체에게 자금을 제공할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에 관한 일반인의 의견 제시 참여 안내

Washington 유틸리티 교통 위원회(Washington Utilities and Transportation Commission)(이하 위원회)는 유틸리티 회사가 위원회의 규제 과정 참여를 고려하는 단체와 체결할 자금 제공 협약에 관한 지침을 구성할 정책 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정 대체 상원 법안\(Engrossed Substitute Senate Bill\) 5295](#), 188장, 2021년도 법(ESSB 5295)은 유틸리티 회사가 위원회에 앞서 규제 과정에 참여하는 특정 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원회에게 협약 제안 내용을 승인하고 해당 자문에 대한 배분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에 따라 위원회와 유틸리티 회사는 취약 계층이나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 사회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에 관해 아래에 나열된 질문을 대상으로 일반인의 의견과 답변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9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의견 접수처는 위원회 웹사이트 www.utc.wa.gov/e-filing 입니다. 의견 작성 시 본 절차의 안건 번호에 유의해 주십시오: U-210595.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9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려 대상의 서면 의견 및 질문 ESSB 5295 4(1)절과 관련한 질문

1. ESSB 5295 4(1)절은 “가스 회사 또는 전기 회사는 본 절의 (2)관에 따른 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저소득층, 상업 및 산업 고객, 취약 계층 또는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단체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위원회가 실시하는 규제 절차에서 광범위한 고객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들과 하나 이상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광범위한 고객의 이해” 및 “규제 절차”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2. 위원회는 유틸리티 회사가 단체와 의무적으로 특정한 형식의 중재자 자금 제공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또한 협약 체결 시 단체에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자금 제공 필요성에 대한 세부 사항, 비용과 경비 보고서 또는 기타 요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경우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다른 주의 협약 모델 또는 기타 선호하는 협약 요건을 알려 주십시오.

3. 위원회는 승인이나 변경 승인, 자금 제공 협약 거부 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까?
4. 합당한 수준의 재무적 지원 배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a. 위원회는 유틸리티 회사 별로 중재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총액을 정해야 합니까?
 - b. 위원회는 협약이 합당한 수준의 재무적 지원 배분과 일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까?

ESSB 5295 4(2)절 및(3)절과 관련한 질문

5. 유틸리티 회사의 자금 예산을 기준으로 중재자 자금을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 제공 또는 분산 지급해야 하거나, 또는 협약을 건 별로 그리고 중재자 자금 용도의 유틸리티 회사 예산 사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체결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까?
6. 단체가 중재자 자금 제공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까? 자격 요건은 진행 절차에 미치게 될 중대한 공헌 등 기타 고려 사항을 근거로 해야 합니까?
 - a. 본 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에는 어떠한 매개 변수가 있습니까?
 - b. 자금을 제공하면 안되는 단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c. 위원회는 Oregon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Oregon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틸리티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단체에 대한 사전 인증을 고려하거나 이를 허용해야 합니까? 또는 모든 협약과 모든 단체에 대해 건 별로 고려해야 합니까?
7. 위원회는 절차 진행 이전이나 진행 도중 단체에 제공하는 전액 또는 일부 지급액 등 임시적 자금 제공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행 절차 완료 시 전체 자금을 분산 지급해야 합니까?
 - a. 위원회는 단체에 대한 임시적 자금 제공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 b. 단체는 임시적 자금 요청에 대한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 c. 위원회는 지불금 수령자가 절차 진행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임시적 자금 제공 지불금에 대한 반납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유를 막론하고 절차 진행을 면제해야 합니까?
8. 비용 감사, 문서 작업, 보고, 기타 등 재무적 지원을 배분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까?

9. 위원회는 협약 승인 이후 협약 및 자금 제공을 관리함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까? 예로, 중재자 비용의 유효성 또는 타당성 평가하기, 또는 최종 자금 제공 금액이나 지급액에 대한 승인 및 거부 그리고 협약과 자금 신청서, 수여한 자금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 추적 관리 등을 포함하는 양식과 서류 작업을 위한 견본 제공하기, 또는 중재자와 유틸리티 회사의 보고 의무화 등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까? 다른 주나 관련 관할지의 행정 모델을 제공해 주십시오.
10. 자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경비나 비용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예: 법률 비용, 전문 서비스, 전문가 증언, 컨설턴트 등)? 자금을 제공하면 안되는 경비나 비용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11. 위원회가 경비나 비용의 합당성을 검토할 경우 위원회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위원회가 합당한 수준의 변호사 및 전문가 증언 비용을 결정하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위원회가 제공된 서비스의 합당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입증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까?
12. 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중재자 자금을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는 서면으로 체결된 자금 제공 협약을 반영하기 위해 요금을 조정함에 있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까?

ESSB 5295 4(4)절과 관련한 질문

13. ESSB 5295 4(4)절은 "취약 계층이나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단체에게는 본 절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a. 취약 계층이나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단체를 우선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 공지 내용에 응해 제공한 다른 의견에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유틸리티 회사가 중재자 자금 제공을 위해 고정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취약 계층과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 사회를 우선시함에 있어 필요한 특정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경우 합당한 수준의 전체 예산 금액이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자금 협약 체결 시 유틸리티 회사의 고정 예산을 배제한 상태에서 건 별로 고려할 것에 찬성한다면, 건 별 방식에서 취약 계층 및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 사회에 대한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 b. 위원회가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 사회"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의하는 내용 또는 법령이나 행정 규정 내 기존 법적 정의에 대한 참조 내용을 제공해 주십시오.